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220 강간, 유사강간
피 고 인 A
검 사 김규성(기소), 윤재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변화
담당변호사 함진우
판 결 선 고 2026. 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5. 17.경 자신의 친구이자 동거인인 B가 피해자 C(여, 25세)를 소개



받는 자리에 동석하여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세 사람은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5. 22. 22:30경 위 주거지에서 B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바닥에 누운 후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몸에 팔이 깔린 상태로 누워있게 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지마, 왜 그래"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하지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속옷을 옆으로 젖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앓힌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멍든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



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남자에게 성관계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떠올리기 힘든 피해 사실을 거듭하여 진술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유사강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씻으라"며 화장실에 가도록 하고,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변기에 앉아서 한 번 더 하자. 입으로 애무해달라"라고 말하며 변기 위에 앉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행위가 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졌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때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 강제추행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강간 범행의 과정에 수반되어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강간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강간 범행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유사강간 범행은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사강간 행위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피고인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어난 것으로서, 이 부분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강간죄에 흡수되어 강간죄 일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유사강간하였다. 이 부분 유사강간 행위가 판시 강간 범행 이후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간 범행 직후 몸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고, 곧이어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에서 다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양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강간 범행 종료 후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연이어 이루어진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간이 끝난 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바로 뒤따라 들어왔다.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달라고 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제 입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 따라서 판

1) 증거목록 순번 45, 4면



시 강간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사강간 행위는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접속하여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한 협박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B에게 호감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성관계 사실 등을 B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²⁾ 이와 같은 협박의 효과는 그 이후 이루어진 유사강간 행위 당시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유사강간 당시 강간 범행 당시와 구별되는 별도의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각 범행 사이의 범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강간 범행, 유사강간 범행으로 동일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④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자필진술서³⁾에 의하면, 판시 강간 범행으로 입은 피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후 이루어진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역시 판시 강간 범행에 따른 피해를 주된 피해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

2) 증거목록 순번 10, 10면

3) 증거목록 순번 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채희인 _____

 판사 김아름 _____

 판사 김상훈 _____